

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

2012. 2. 10. 제정

2022. 5. 6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별 위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위원 6명
 2. 학부 총학생회장, 학부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 위원 6명
 3. 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 1명
-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 3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의 경우 총학생회의 임기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의 심사·의결
3.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 조 (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·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항

⑥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 6 조 (상위법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시행령, 사립학교법,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.

부 칙(2012. 2. 10. 제정)

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5. 6. 개정)

이 내규는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